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을 지정(변경)함에 있어 주민 및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1. 지정취지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국가하천

하 천 명	금지사항	구 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아 라 천	낚시	양안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33.8km
	야영 취사		청운교 ⇄ 계양대교(남측, 북측 경관도로)	24.0km
굴 포 천	낚시 야영 취사	양안	갈산동 404-12 ⇄ 삼산동 106-24	6.8km
		좌안	삼산동 302 ⇄ 삼산동 325-312	0.7km
		우안	삼산동 301-1 ⇄ 삼산동 325-446	0.4km
		양안	당미1교 ⇄ 굴현보	2.6km
	낚시	양안	체절수문 ⇄ 상야교	3.0km
	낚시	좌안	중앙교 ⇄ 천상교	1.2km

○ 지방하천

하 천 명	금지사항	구 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공 촌 천	낙시 야영 취사	양안	공촌2교 ⇔ 공촌천교	5.4km
		좌안	공촌천교 ⇔ 서해수문	1.6km
심 곡 천	낙시 야영 취사	양안	청중로 봉수교 ⇔ 보존지역 일대	9.6km
		우안	보존지역 일대 ⇔ 서해수문	0.9km

나. 낙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낙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낙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낙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벌 칙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하천법 제9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광역시 낙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하천법 시행령 별표5] ① 1차 위반 : 100만원 ② 2차 위반 : 200만원 ③ 3차 위반 :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2021. 9. 6. ~ 9. 27. (22일간)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라.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하천환경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수질환경과

○ 연 락 처 : 032-440-3627, 팩 스 : 032-440-8686

5.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 1】 금지지역 위치도

1. 아라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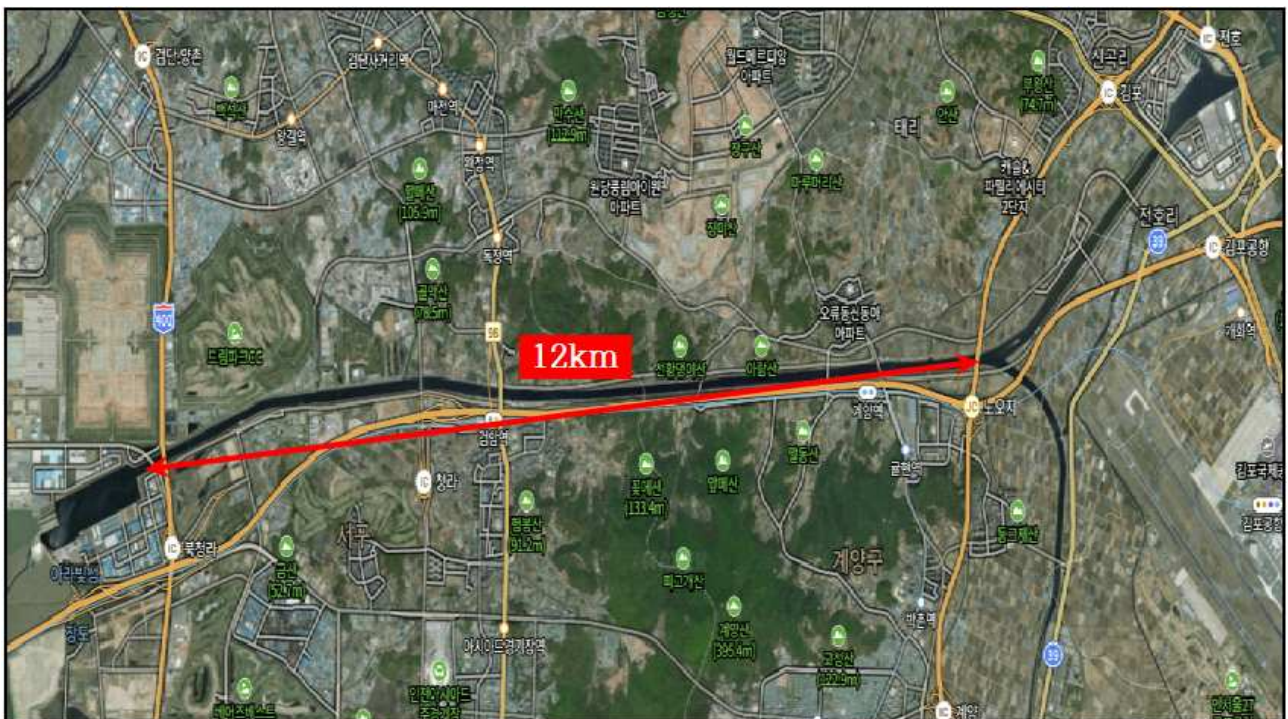
○ 금지사항 : 낚시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안 제방 33.8km (김포시 구간 제외)



○ 금지사항 : 야영, 취사

- 청운교 ⇄ 계양대교 남측, 북측 경관도로 좌우안 24.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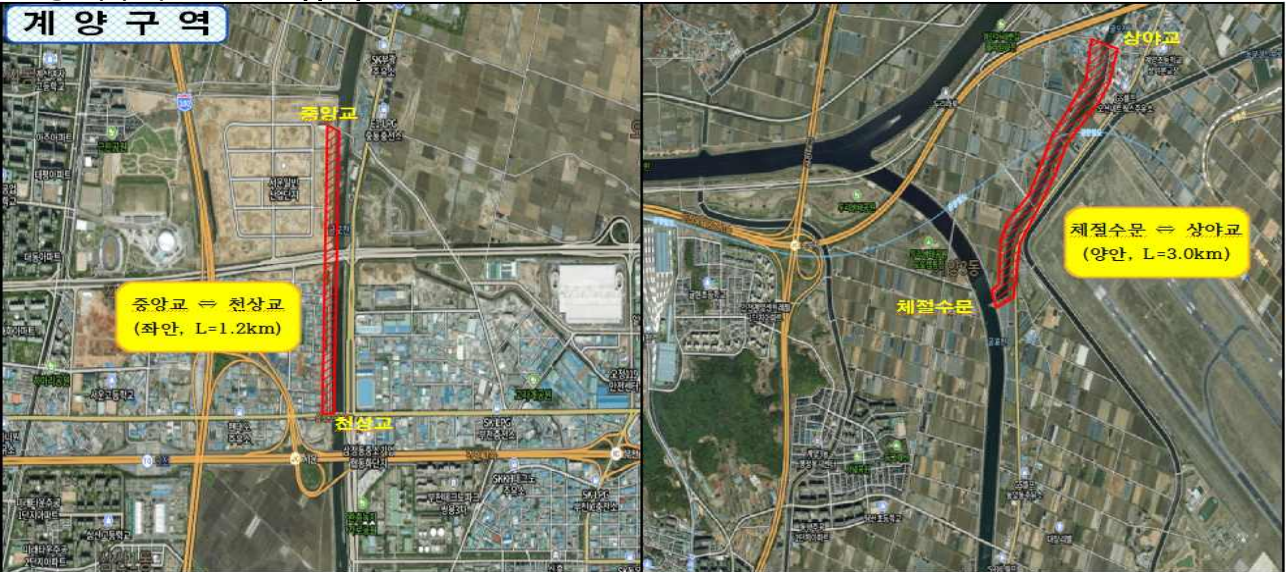


2. 굴포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 금지사항 : 낚시



3. 공촌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4. 심곡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붙임 2】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공 고 명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의 건 제출인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건 내 용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본관5층 수질환경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440-8686) [문의 : ☎032-440-3627]